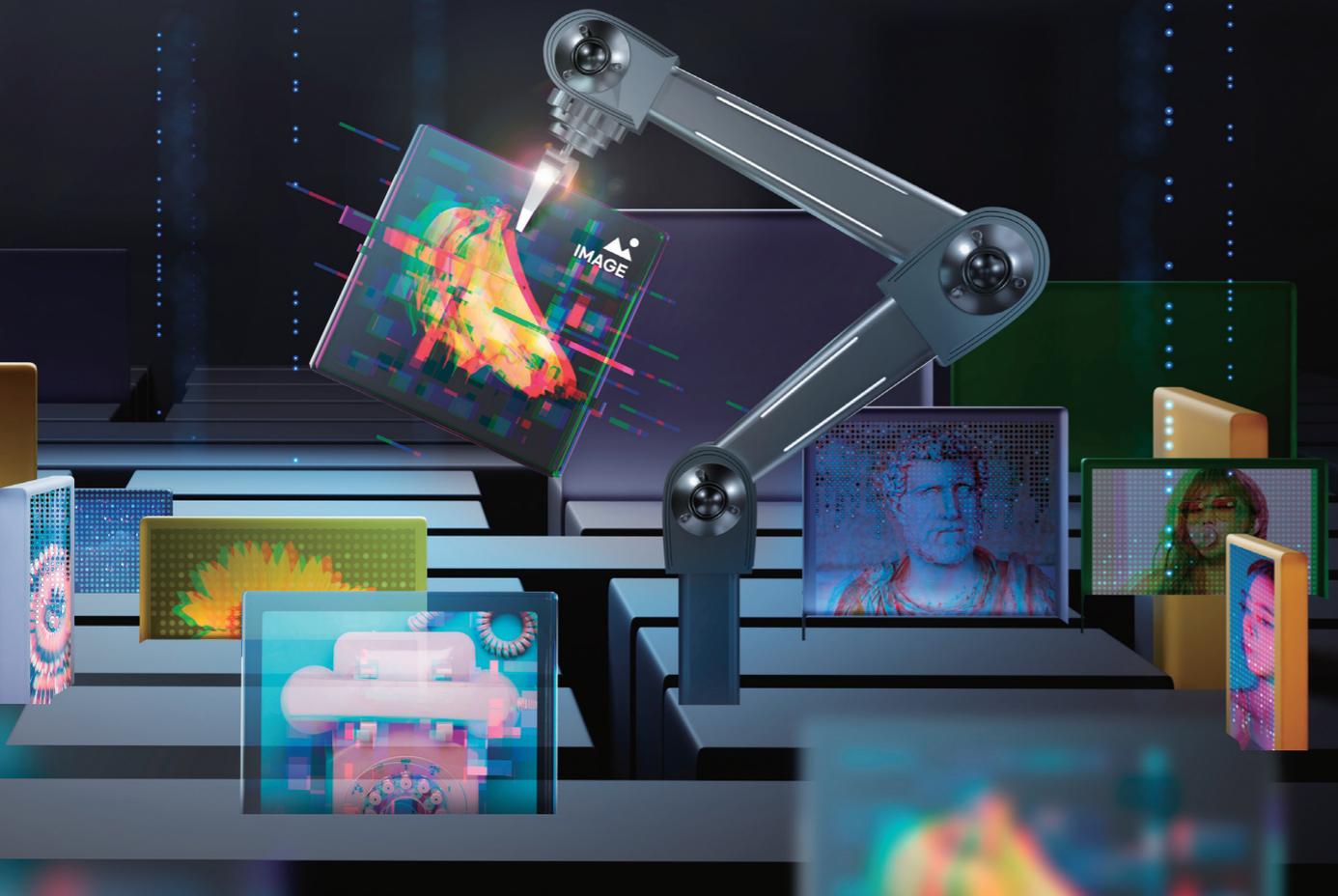


미국 저작권청의 AI 생성물 등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윤명

법학박사 |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 digitallaw@naver.com



서론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판단형 AI를 넘어, 생성형 AI가 대세가 되면서 AI(인공지능)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판단형 AI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추천해 준다. 반면,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과 유사하게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통해 저작물을 생성하기도 하고, 기계번역과 같이 단순하게 언어를 변환하는 경우도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영역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준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경우 인간 능력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기회가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물론, AI가 사용되는 방식이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결과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창작적 기여가 없이 단순한 지시형 내지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자율형이라면 그 결과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율형 AI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형 AI의 저작물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언젠가 특이점이 도래하고 AI가 인간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인간이 창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창작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AI가 인간을 모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AI를 권리·의무의 주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로봇의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의 기여도 및 그에 따른 법적 성질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등록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AI 생성물의 법적 성질을 살펴본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써 저작권청의 AI 생성물 등록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AI 생성물의 법적 성질

1. 사진 촬영과 생성형 AI의 프롬프팅

가. 촬영과 프롬프팅

사진은 사진작가에게 카메라를 조작해 셔터스피드, 감도(ISO), 화면의 구성, 피사체에 대한 빛의 세기나 조명 등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결과물이다. 대법원은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시하기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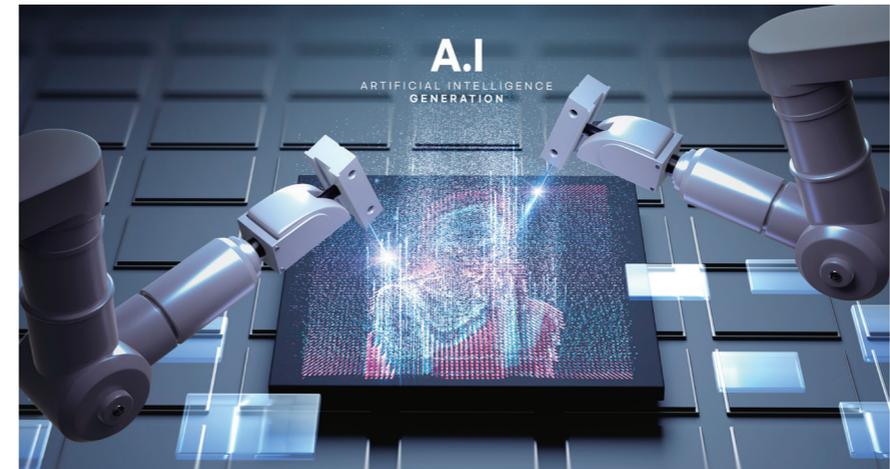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¹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촬영은 사진작가에 의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지금은 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사진이 상업용으로 사용되던 시점에는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란이 예상된다. 즉,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프롬프트는 입력창에 자연어를 입력하고, 그것을 AI 모델이 해석해 인간의 의도에 따른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의도와 다르거나,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프롬프트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생성하게 된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용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프롬프트 과정은 사진 촬영의 과정과 유사하다. 촬영한 결과물이 의도와 다를 경우 촬영자는 셔터스피드나 ISO 등을 조절해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프롬프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에 대한 논란에 따른 것처럼,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한 결과물이 단순한 지시라는 이유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사진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모델의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의 쟁점은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한 시절에 무단 이용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진은 글이나 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가 실제 물체 혹은 사람을 종이에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자에 대해 “무엇이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저작자, 제작자, 과학적 저작물이나 문학을 완성하는 사람”이라 판시했고, 사진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콘셉트를 대표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지칭했다.² 다만 동 사건에서 명확하게 사진의 저작물성의 요건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³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사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가 설립됐다. CONTU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복제가 적용되거나 개입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The creation of new works by the application or intervention of automatic systems of machine reproduc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해석하는 법원 입장을 따르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창작한 작품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별도의 저작권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했다. CONTU는 최종 보고서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에 사용된 장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제작될 때 최소한 인간의 창조적 노력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CONTU 보고서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저작권청’이라 함)의 견해를 반영했는데, 1976년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10년 전, 컴퓨터로 창작한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를 연구한 저작권 등록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저작물 요건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인간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단지 보조도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의 전통적인 요소를 직접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¹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² 111 U.S. 53 (1884).

³ 이상정,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일고, 계간저작권27(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4

다. 정리 : 사진의 창작과 AI 프롬프트의 창작 비교

사진에 담긴 사진작가의 창작성과 의도성은 사진이라는 작품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는 창작적 도구로 활용되며, 이는 우리가 펜이나 다른 도구를 활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사진의 저작물성의 인정여부는 다툼이 있었으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생성형 AI에서도 반복된다. 사진 촬영과 AI 프롬프트의 창작 과정은 놀랍게도 유사한 점이 많다. 즉 카메라를 직접 손으로 작동하는 것과 AI를 활용해 키보드나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AI 모델에 지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AI 생성과 인간 창작의 비교

가. 인간의 창작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함으로써, 창작성을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⁴ 따라서 AI를 활용한 경우도 창작적 기여를 인간이 했다는 것이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필요하다. 만약, 창작적 기여 없이 프롬프트(Prompt)에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라면 이는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⁵

나. AI의 생성

현재 시점에서 AI가 '생성'한다는 것은 AI가 자율적으로 창작의 기획과 창작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AI가 생성하도록 지시나 명령을 내림으로써, AI는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를 하게 된다. 즉, 창작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AI 생성이나 인간 창작의 법률적 효과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AI를 도구적으로 활용한 경우라면 인간의 창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시형의 경우는 논란이 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한 것과 단순한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의 풍경'과 '노을이 지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의 풍경을 수채화풍으로, 미술가의 입장에서'라는 내용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순 지시형과 구체적인 지시형의 차이를 찾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AI 생성물의 법적 성질

가.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른 결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을 통해 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AI가 생성한 것이 아닌, AI를 활용해 창작한 것을 AI 창작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만, AI 생성물은 AI 창작물을 포함해 AI에 대한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물로서 AI 창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인간이 관여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비저작물 내지 콘텐츠로서 법적 성질을 가질 것이다.

나. 콘텐츠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결과

인간이 관여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물이 아닌 콘텐츠로서 법적 성질을 가질 것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창작하는 주체에 대한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AI 생성물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콘텐츠 제작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AI가 생성하거나 창작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해당한다. 다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투자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⁵ 김윤명,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제연구 no.51, 한국법제연구원, 2016, 216면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⁶

다. AI 생성물 : 사실행위에 따른 결과

AI 스스로 생성한 것은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물성이나 콘텐츠로서 법적 성질을 부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확하게 도구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지시형이나 자율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정리

위 3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여도에 따른 결과물의 성질

구분	AI창작물	AI콘텐츠	AI생성물	저작권 등록
창작적 기여 (도구형 AI)	○	-	-	가능
인간 지시 (지시형 AI)	△ (구체적 지시)	○	-	유보 (구체적인 경우 가능)
AI의 자율 (자율형 AI)	-	-	○	불가
적용 법률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공유영역 (Public Domain)	-

출처: 연구자 작성

⁶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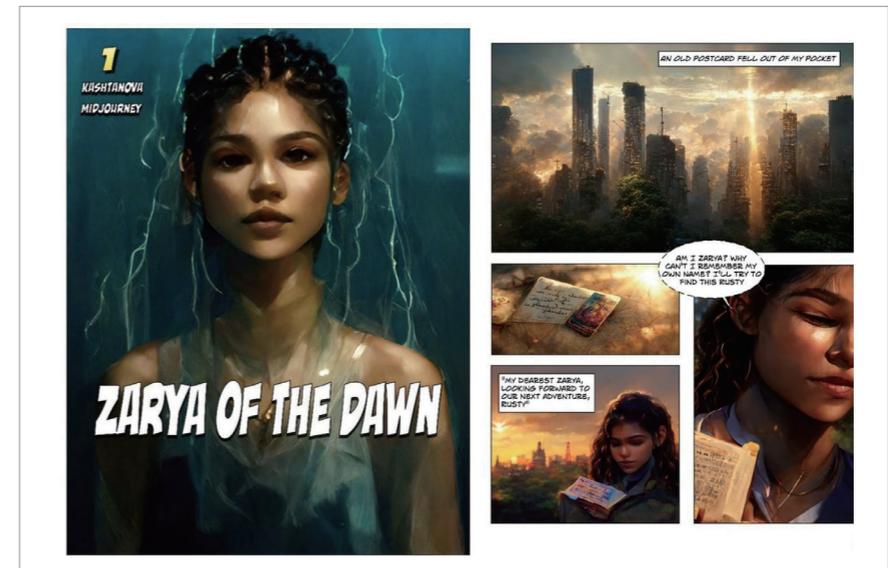
**미국 AI 생성물
등록가이드라인 검토**

1.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 사건

가. 사실관계

<새벽의 자리아>는 그래픽 소설로 저작권청⁷에 등록을 했고, 저작권청도 형식심사라는 점에서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다른 이슈 없이 등록했다. 이후 작가는 AI가 생성한 작품이란 점을 SNS에 공개했고, 이러한 사실을 저작권청이 인지하게 됐다. 이에 저작권청이 사실 여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작가에게 요청하면서,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

[그림 1] <새벽의 자리아>



출처: 저작권청(2022)

<새벽의 자리아>는 일종의 편집물이다. 이미지와 텍스트 및 이들의 구성(편집)이 하나의 저작물로서 등록된 것이다. 다만 등록표시에는 저작자를 사람으로 표시했고, AI의 도움을 받아

⁷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의회, 기타 기관 및 연방 사법부에 저작권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임무를 맡은 연방 기관이다. 저작권청은 1870년 설립된 이래로 저작권 등록을 감독해 왔기 때문에 저작물과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의 구별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

작성했다는 사실표시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저작권청은 시가 어느 수준 활용됐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이다.⁸

나. 작가 및 저작권청의 입장

작가는 등록 저작물에 미드저니라는 점을 표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신청서에 명확하게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저작권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저작물은 인간만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등록을 취소했다. 물론 해당 저작물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닌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취소했다. 따라서 여전히 텍스트와 편집에 대한 저작물은 등록된 상태이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스페이스 오페라극장>에서 저작권의 인정여부이지만,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야> 사건을 계기로 AI생성물의 등록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2.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

최근에는 표현 재료를 생성하는 정교한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인간이 만든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하고, 그 훈련 과정에서 얻은 추론을 사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미드저니나 챗GPT 등 생성형 AI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Prompt)라는 시스템에 따라 작동한다. 결과 출력은 텍스트, 이미지 또는 오디오일 수 있으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AI에 의해 결정된다. 생성형 AI로 설명되는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생산하는 자료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사람이 저작한 자료와 AI가 생성한 자료로 구성된 저작물이 등록될 수 있는지, 또 저작권청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2월 저작권청은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와 사람이 쓴 텍스트로 구성된 그래픽 소설(Graphic Novel)은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별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때 AI 기술을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지명하거나 신청서의 작성자 또는 참고사항 항목에 AI가 생성한 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목이나 기탁물의 사사표시에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의 이름이

⁸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VAu001480196)", February 21, 2023.

기재돼 있었다. 이에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등록에 대한 공개 지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3.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인간저작자 요건

미국의 헌법과 저작권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저자'란 용어는 비인간을 배제한다. 저작권청의 등록 정책 및 규정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및 사법적 지침을 반영한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자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해석할 때 비인간을 배제한 언어를 사용했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사진 무단 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은 의회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⁹ 연방 대법원은 헌법의 저작권 조항이 사진이 "작가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을 대표하는 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저작권청의 기존 등록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이 인간 저작물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1973년 판 등록가이드라인에서 저작권청은 그 출처가 인간 대리인이 아닌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84년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판에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3월 발표된 최신판에서 저작권청은 저작물이 저작권이 되려면 사람이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계나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 저작권청의 인간저작자 요건

저작권청은 기술에 의해 생성되거나 기술의 도움으로 생성된 자료, 또는 저작권이 없는 자료와 결합된 인간의 저작물 등을 평가하는 데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청은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또는 다른 장치]가 보조 도구일 뿐인 인간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 요소(문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표현 또는 선택, 배열 등의 요소)가

⁹ 111 U.S. 53 (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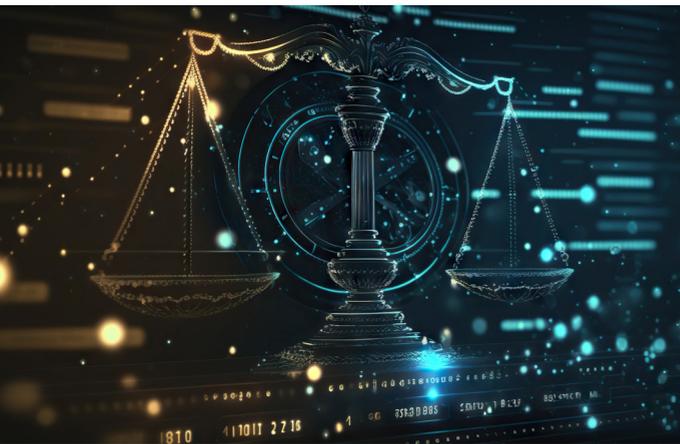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됐는지를 판단한다. AI로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청은 AI 기여가 “기계적 재산산”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자의 “가시적인 형태를 부여한 독창적인 정신적 개념”을 보조한 것인지 고려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상황, 특히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최종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저작물에는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권청은 이를 등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프롬프트(Prompt)만을 수신해 인간으로부터 복잡한 서면, 시각적 또는 음악적 작품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의 전통적인 요소”가 인간 사용자가 아닌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저작권청의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지 완전히 창의적인 통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러한 프롬프트는 의뢰를 받은 작가에게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능을 한다.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식별하지만, 기계는 이러한 지침이 최종 출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텍스트 생성 기술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저작권법에 관한 시를 쓰라”고 지시하면 해당 시스템은 시의 형태를 인식하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셰익스피어의 스타일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이 운율 패턴, 각 줄의 단어, 텍스트의 구조를 결정할 것이다.

AI 기술이 출력의 표현 요소를 결정할 때 결과물로 생성된 자료는 인간 저작물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등록 신청서에서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에도 충분한 인간의 참여가 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AI가 생성한 자료를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해 결과물 전체를 원본 저작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른 예시는 아티스트가 원래 자료를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수정이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AI 기술에 의해 생성된 경우이다. 이 경우 저작권은 AI 생성 자료 자체의 저작권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인 저작물의 인간 저작 측면만 보호한다.

이는 기술적 도구가 창작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거나 표현적인 저자를 재구성, 변형 또는 조정해 왔다. 예를 들어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을 사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시각 예술가는 수정된 이미지의 작성자로 남고 작곡가는 녹음할 때 기타 페달과 같은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작품의 표현을 창의적으로 통제하고 저자의 전통적인 요소를 실제로 형성한 정도이다.

다. 저작권 신청자를 위한 지침

저작권청의 정책에 따르면,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인간 저자의 기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개는 “저작물의 준비 또는 식별 또는 저작권의 존재, 소유권 또는 지속 기간과 관련해 저작권 등록원이 간주하는 정보”로, 저작권청이 요구하는 정보이다.

(1) AI 소재가 포함된 저작물의 신청

AI 기술을 활용해 저작물을 만드는 개인은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자를 식별하고 ‘작성한 저자’ 필드에 사람의 기여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텍스트를 더 큰 텍스트 작업에 통합하는 신청자는 텍스트 작업에서 사람이 작성한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 작품 내에서 인간 및 비인간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배열하는 지원자는 ‘저자 생성’ 필드를 작성해 저자가 만든 [인간이 만든 콘텐츠 설명]의 선택, 조정 및 배열 및 AI가 생성한 [AI 콘텐츠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는 작품을 만들 때 사용했다는 이유로 AI 기술이나 이를 제공한 회사를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2) 이전에 제출했거나 계류 중인 신청의 수정

AI로 생성된 자료가 포함된 작품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저작권청에 제공된 정보가 해당 자료를 적절하게 공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이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청에 현재 계류 중인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에 AI 생성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누락됐음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 처리돼 등록된 신청서의 경우라면 추가 등록을 제출해 등록기록을 수정해야 한다. AI로 생성된 자료에 대한 등록을 획득한 후 공개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지원자는 등록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다.

4.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한계

가. 의의

AI 등록가이드라인은 AI 생성물에 대한 등록지침을 제공한다. 이처럼 AI가 사용된 정도에 따라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AI가 관여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AI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즉, 실질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

나. 한계

등록제도는 등록과정에서 출원인이 허위의 표시를 하는 경우 사실상 권리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술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창작한 것인지, 기계가 생성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새벽의 자리아> 사건은 작가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린 내용을 저작권청이 인지하고, 직권으로 확인 요청한 것이다. 만약 작가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이슈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텔러 박사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표기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저작자 표시를 “다부스(DABUS)”로 했기 때문에 등록이 거부됐다. 가이드라인은 AI 창작물 또는 생성물의 창작성이나 저작물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상 AI가 도구적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지시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저작물성이 달라진다. 사실과 다르게 저작자를 표시한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질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란 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형식요건,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AI 생성물과 AI 창작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도 등록제도를 통해 AI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저작권법상 등록을 인정한다는 것은 해당 등록 대상이 저작물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작물에 체화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 표현인지 여부를 다루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의 관여가 있었는지, 관여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AI를 활용했는지 여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됐을지라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자는 인간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물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AI를 도구적으로 사용해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단순한 도구적인 활용인지, 지시명령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저작물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를 창작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AI 생성물의 등록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자에게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새벽의 자리아>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AI가 생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등록자가 해야 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보호범위나 보호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AI를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 등록이 권리발생요건이 아니기에 형식적인 심사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적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AI가 생성한 것인지 여부를 인간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I의 생성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또한 불합리할 수 있다. 결국, AI의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판단은 사회적 합의라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이 입법되기 전까지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판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